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94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 강민국 • 권성동 • 강명구

윤한홍 · 유영하 · 김상훈

이헌승 · 김재섭 · 정동만

박성민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불법채권추심을 동반한 반사회적인 불법 대부계약이 횡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는 등에 따른 범죄피해 확산 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불법업체 난립 등으로 인해대부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낮은 실정임.

이에,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대부업 등록기준 및 요건을 상향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 등을 하는 자를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 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여 그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7호·제8호 등).
- 나. 대부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 도록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조제2항제6호).
- 다. 시·도지사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도입함(안제3조의5).
- 라.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
- 마.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시 「상법」 제54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화하도록 하여 불법대부에 따른 범죄이득을 제한함(안 제11조).
- 바. 불법사금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 형량을 징역 5년 이하·벌금 2억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19조).

법률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전의 대부"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로,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부중개를"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 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대부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정사업장"을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1년간"을 "3년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추어야"를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천만원"을 "3억원"으로, "금액"을 "금액(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까지"를 "제6호까지,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1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 9.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된 다른 대부업자등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 자, 임직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 제5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 2.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하는 행위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는 제 8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 우
 -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 나. 인신의 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이나 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2.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 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

조, 제10조,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② 불법사금융업자는 그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연체이자를 원본에 포함하여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대부계약의 경우 연체이자를 원본으로 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2.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를 포함한다)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가 면제 또는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에 제6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경우 제9조의3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거나,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

제9조의4의 제목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을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한다)"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 등록된 다른 대부업자등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 자, 임직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

제9조의6의 제목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불법 대부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견한"을 "발견하거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으로, "광고에 사용된"을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에 이용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의 확인·신고."로 한다.

④ 누구든지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시·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제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정보 보호) 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 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 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 제목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상법」 제54 조에 따른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

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경우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본다.

제11조의2제1항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상 대부업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7조, 제8조, 제8조의 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 각 호"를 "제1항 제1호"로 한다.

2. 제3조의5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3조의5제2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 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

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미등록대부업자"를 한다.

- 4. 제8조(제1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 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 5. 제9조의3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 6.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양수·대여·유통한자
- 7.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 또는 대부중개과정에 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 8.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제21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직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한 자

별표 1 제2호의2 중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부에 관한 계약을 체결(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등록요건 및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이 법 시행 전에 발 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 런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3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대표자, 임직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 또는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햀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 | 1. ----- 이익을 얻을 목 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 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 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 으로 금전을 대부-----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 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 ---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 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 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 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 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 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 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가. • 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 2. ----- 이익을 얻 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 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 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3조(등록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 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 5. (생략) <신 설>

6. (생략)

③ ~ ⑧ (생 략)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

-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 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 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 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 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2
·

- 1. ~ 5. (현행과 같음)
- 6. 대부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 7. (현행 제6호와 같음)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u>한다</u>.

- 1. <u>1천만원</u>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 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생략)
-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u>고정사업장</u>을 갖 출 것
- 4. (생략)
-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 나. (생 략)

다. 최근 <u>1년간</u>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 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 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 다)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
을 유지하여야 한다.
1. 1억원
2. (현행과 같음)
3
고정사업장, 인력
<u>과 전산설비 등</u>
4. (현행과 같음)
5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3년간</u>
_

라. (생략)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생략)
- 2. <u>1천만원</u>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u>금액</u>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u>다만, 대</u> 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3. ~ 7. (생략)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6. (생략)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
 한 날부터 <u>1년</u>이 지나지 아니
 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

라. (현행과 같음)
②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1. (현행과 같음)
2. <u>3억원</u>
<u>금액(다만, 대</u>
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이
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금액)</u> <단서 삭제>
3. ~ 7. (현행과 같음)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제6호까지, 제9호-
1. ~ 6. (현행과 같음)
6의2
0의2. 3년
<u>ou</u>

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 다)

7. (생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5조의2(상호 등) ① ~ ④ (생 제5조의2(상호 등) ① ~ ④ (현행 략)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 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 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 7. (현행과 같음)
- 9.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 사에 등록된 다른 대부업자등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 위원회에 등록된 다른 대부업 자등의 대표자, 임직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

과 같음)

-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 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 2.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 · 양수 ·대여·유통하는 행위
-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전부 무 효로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 관,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

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 자"라 한다)는 제8조에도 불구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 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 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 나. 인신의 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 취업이나 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 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2. 폭행·협박·체포·감금·위 계·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 하게 불리한 경우
-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 ② 불법사금융업자는 그와 대부 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의 채 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연체이자 를 원본에 포함하여 다시 대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결한 대부계약의 경 우 연체이자를 원본으로 한 부 분은 무효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 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2. (생략) <신설>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 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 오

- 2.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를 포함한다)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가 면제 또는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3.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 에 제6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와 달리 기재된 경우제9조의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등) ① -----

- 1. 2. (현행과 같음)
- 3.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
 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
 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거나,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금

3. (생략)

② (생략)

-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등) ①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 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생략)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대부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① -----

<u> 융상품으로서</u>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으로 오
인될 수 있는 표현	현 등을 사용
하는 광고 행위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4(불법사금융	유업자로부터
의 채권양수 · 추심	
불법사	
르 11/기	<u> </u>
	•.
② 불1	
<u>업자</u>	
<u>.</u>	
③ (현행과 같음)	

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시 ·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 항을 위반한 광고를 <u>발견한</u> 때 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해당 <u>광고에 사용된</u> 전화 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 설>

- 1. · 2. (현행과 같음)
- 3.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 사에 등록된 다른 대부업자등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 위원회에 등록된 다른 대부업 자등의 대표자, 임직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6(불법 대부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에 이용된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누구든지 제9조의2제1항 및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항을 위반한 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하는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 는 시 · 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전화번호의 확인·신고, -----

> 제9조의9(대부업 이용자의 정보 보호) 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 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②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 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 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 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 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 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 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대부중개업자는 <u>미등록대부업자</u>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 (이하 "대부중개업자등"이라 한다)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

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상법」 제54조에 따른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8 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불 법사금융업자"로 본다.

제11조의2(중개의 제한 등) ①
<u>불법사금융업자</u> -
②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 니 된다.

③ ~ ⑥ (생 략)

<신 설>

-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 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생략)
-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
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구
체적인 기준·절차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
상책임) ① <u>대부업자등(불법사</u>
금융업자 • 불법사금융중개업자
를 포함한다)은 대부업등(사실
상 대부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
<u>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1

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u>제7조부터 제9조까지</u>,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 2. (생략)
-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한다.
- 1. (생략)
- 2. 제3조의5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 8. (생략)

- ③ ~ ⑤ (생 략)
- ⑥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 또는 그 임직원이 <u>별표 1 각 호</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제7조, 제8조, 제8조의2</u>
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2. (현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제3조의5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3조의5제2항제1호ㆍ제
2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
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요
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

2의2. ~ 8.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⑥ -----

----- 제1항제1호--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 3. (생략)
- (7) · (8) (생 략)
-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19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신 설>

<신 설>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 (7) · (8) (현행과 같음)

----- 2억원 -----

-----.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8조(제1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 5. 제9조의3제1항제3호를 위반 하여 광고를 한 자
 - 6.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 2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 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양수 ·대여·유통한 자
 - 7.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 또는 대부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 의 개인정보를 용도 외의 목 적으로 처리한 자
 - 8.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 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1의2.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 2. (생략)
-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를 받은 자
-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u>(3)</u>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과 같음)<삭 제>

4. -----<u>불법사금융업자</u>-----

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u>미등록대부중</u> 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 10. (생략)

③ (생 략)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신 설>

- <u>1</u>. (생 략) 2. ~ 12. (생 략)
- ②·③ (생 략)

불법사금융중개
업자
5. ~ 10. (현행과 같음)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u>.</u>
1. 제4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직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선임

- 2. ~ 12. (현행과 같음)
- ② · ③ (현행과 같음)

한 자